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429,726,123 | 42,891,784 |
| 일반회계 | 1,218,586,793 | 36,557,604 |
| 특별회계 | 211,139,330 | 6,334,18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69,732,081 | 5,091,962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73,170,279 | 2,195,108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96,561,802 | 2,896,854 |
| 기타특별회계 | 41,407,249 | 1,242,217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67,420 | 2,023 |
|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| 8,008,081 | 240,242 |
|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| 704,000 | 21,120 |
|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| 10,150,000 | 304,500 |
| 교통사업특별회계 | 19,799,276 | 593,978 |
| 대지보상특별회계 | 500,000 | 15,00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2,178,472 | 65,354 |

제 2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과 같다.

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『해당없음』으로 한다.

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『계속비사업조서』와 같다.

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『해당없음』와 같다.

제 6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『11,076,040천원』으로 한다.

제 7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『14,400,000천원』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『총액인건비』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